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65)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 신설(이원택의원안)	3

I. 개요

1.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4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5
- (3) 회 부 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

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 신설(이원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설>	☐ <u>특별세액공제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추가</u> (안 제59조의4제5항)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요건: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율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 : 10% 나머지 : 6% ○ 공제한도: 자녀 : 6만원 (나머지:3만원)

* 이원택의원안 2024. 11. 5. 제출(의안번호 5265)

☐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혼인한 사람 제외)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 10%를, 나머지의 경우 6%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휴대폰 회선 수는 5,674만 6,792개로,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재적인 성격이 있어, 개정 조항의 기타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 및 교육비와 같이 필수 소비 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지출 가계동향”에 따르면 2024년 1인 이상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은 12만 7,000원으로 전체 월평균 소비 지출(289만원)의 4.4%에 달함.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분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세액공제 적용 시 면세자¹⁾인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세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 2023년 귀속소득 기준 33%

[취약계층 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감면대상	기본료 및 통화료 35%	월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한도	없음	월 33,500원	월 21,500원		월 11,000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한정된 재정여건 및 조세지출 확대에 의한 세무 왜곡의 복잡성 증대와 동일 재정 투입 대비 정책 대상자의 선별 효율성이 낮은 형식의 조세 지원 확대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³⁾

둘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인터넷 이용료, 전기요금 등 유사한 일상적인 경비에 대한 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규정하며 그 중 혼인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력이 아닌 혼인 여부만을 이유로 특별세액공제에 차등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

2)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소득세율이 14%부터 시작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이 매끄럽게 상승하는 이원누진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과세대상에 포착되는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액공제보다는 세율구조와 수당제도를 통해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공제 확대를 통한 세제지원이 아닌 세율 구조 자체의 조정을 통한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3)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2025년 3,89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23억원의 재정 수입 감소를 예상하였음.

20세 이하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는 자녀세액공제(법 제59조의2)의 경우도 자녀의 혼인 여부를 공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158

4)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